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 요건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내
3.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최근 3년 내 장애인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4회 이상 참가한 자
2. 10년 내 장애인골프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장애인골프협회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서 선임된 경력 자

③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골프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결격사유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선거관리지침 》

제7조(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